

October 4,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9. 28. ~ 10. 2.)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추가로 확인된 ‘상임위(정무위, 산자위)별 증인 등 명단’을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 등 명단(추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 강화

2019. 9. 27.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개정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거쳐 2019. 12. 28.부터, 그 외 규정은 2019. 9. 27. 공포 즉시 시행

[\[참고자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pdf](#)



[공정위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2019. 9. 30.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개정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적용 직종 확대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추가), ② 직종별 법 위반 행위 유형 구체화, ③ 공정거래법·타법 간 집행 체계 개선

[\[참고자료\] 특고지침 개정·시행.pdf](#)



[공정위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①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②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③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④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 11. 11.까지 입법예고

[\[참고자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금융위·금감원]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증권사(3개)·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 실시하여,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점 발표

[\[참고자료\]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pdf](#)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의결

2019. 10. 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참고자료\] ILO 핵심협약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사관계법제과\).pdf](#)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상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만 각 50%씩 귀속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개발 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되어 있음. 결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부담으로 광역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자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을 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상 자금 조달의 규제로 인해, 부동산신탁업자가 자금 조달시 주로 선분양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 그러나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골프장과 같이 분양이 없는 부동산신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수월하게 조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선분양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개발사업별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되 그 수탁금액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비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의 매수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신탁업자가 분양대금의 투입 없이 사업비 전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분양제 토지신탁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3조제4항·제5항, 제105조제2항, [별표 1] 제102호의2·제102호의3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의원 등 10인\)\]](#)

현행 전기사업 허가의 절차상 주민들은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사업 시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중소규모발전소(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이외의 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은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수렴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의 생략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인)]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및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과세 제외는 수출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대기업의 간접수출만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더구나 간접수출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는 대기업들의 생산기반 해외이전이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보호,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간접수출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서의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 등 명단(추가)

2019. 9. 27.자 뉴스레터 이후 추가된 상임위(정무위, 산자위)의 증인 등 명단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 등 명단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되는 증인 등 명단을 확인한 후 매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명단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복지위		
국토위		없음
과방위		
법사위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 전략적 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